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석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1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0. 29.

발의자 : 이석현 · 도종환 · 정세균
윤일규 · 김철민 · 안호영
홍영표 · 김병기 · 전현희
송갑석 · 유승희 · 신동근
조승래 · 기동민 · 윤준호
백재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관이란 법인의 근본규칙을 명기하고, 법인의 운영과 활동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함.

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근본규칙의 변화와 밀접하게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, 이는 법인의 과거와 현재의 활동을 감사하는 데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.

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은 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없음. 이는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살필 수 있게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.

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,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

록 하고자 함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</p> <p>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정관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1.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